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시정요구

제 목 산지 토석채취 허가지역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아산시 ○○과 지방○○○○ ○○○
(전 ○○○○관)

② 충청남도 아산시 ○○○○관 지방○○○○ ○○○

③ 충청남도 아산시 ○○○○○○사업소 지방○○○○○ ○○○
(전 ○○○○관)

내 용

지방○○○○ ○○○은 2015. 1. 2.부터 2016. 2. 29.까지, 지방○○○○ ○○○은 2016. 3.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산시 ○○○○○실에서 산지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복구 준공 업무 담당으로, 지방○○○○○ ○○○은 충청남도 아산시 ○○○○○실에서 산지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복구 준공 담당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아산시에서는 [표1]과 같이 아산시 ○○○면 ○○○리 ○○○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산지 토석채취허가를 하였다.

[표1]○○면 ○○○리 일대 토석채취 허가현황

구분	위치	면적(㎡)	채취량(㎡)	기간	준공여부	비고
1차허가	○○리 ○○○번지 외 4필지	66,590	1,191,500	'06.9.25~ '15.12.31	준공	-
2차허가	○○리 ○○○번지 외 4필지	56,361	1,085,400	'11.12.14~ '16.12.31		
3차허가	○○리 ○○○번지 외 1필지	81,859	942,297	'14.11.25~ '19.3.30		
1차변경	○○리 ○○○번지 외 9필지	134,181	1,104,432	'15.10.19~ '19.3.30		
2차변경	○○리 ○○○번지 외 9필지	134,181	1,642,111	'14.4.18~ '19.3.30		채취량 증가

※ 충청남도 ○○○○과 제출자료 재구성

1. 법령에 맞지 않게 무분별한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별표 8]의 토석채취 방법에 의하면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 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산시에서는 ○○○○○○(주)이 ○○면 ○○리 ○○○번지 일대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맞게 계단식으로 토석을 채취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허가지역 일부가 상단부터 하단까지 일괄적으로 발파되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부적정하게 산지를 관리되고 있다.

[그림] ○○면 ○○리 일대 토석채취 현장



2. 침사지 등 미설치로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산지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피허가자는 허가당시 환경영향평가 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계획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허가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계획에 따라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등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해 침사지 및 절개지 관리, 배수시설 설치하는 등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산시 ○○면 ○○리 허가지역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기 허가된 지

역(1~2차허가)에 4.0m×4.0m×2.0m 규모의 침사지 7개소를 설치하고 3차 허가지 내에 같은 규모의 침사지를 10개를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예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감사기간 동안 현지확인¹⁾ 결과 3개소의 침사지만 존재²⁾하고 존재하는 침사지 또한 반경 2~3m 내외의 계획보다 크기를 작게 설치하여 토사가 유출되고 있고, 허가지역 입구에서 230m 아래에 있는 석당저수지까지 토사가 쌓여 2012년, 2015년 2차례에 거쳐 준설하는 등 사업계획과 다르게 허가지역에 많은 량의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

3. 당초 복구계획을 승인한대로 미 복구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산지 복구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산지 복구의무자는 당초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산지복구설계서, 환경영향성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당시 제출한 설계서에 근거하여 산지 복구를 하여야한다.

그런데 아산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의 기 허가된 지역을 준공하면서 가~다와 같이 승인(계획)된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도

1) 현지 확인결과 실제로 허가지역에서 흐르는 물에 토사 등이 섞여 저수지에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확인함

2) 현지확인 과정에서 침사지가 없다고 지적하자 그 후 일부 침사지를 조성함

부실하게 복구 준공 처리 하였다.

[표2] ○○면 ○○리 일대 토석채취허가 지역 준공(2차)현황

허가지역	지적 (㎡)	허가면적 (㎡)	허가기간	복구면적 (㎡)	준공일	비고
계	239,360	39,088			' 15.11.16	
○○리 ○○○	97,750	3,457	' 11.12.15 ~ ' 16.12.31	39,088	' 15.11.16	
○○리 ○○-○	63,774	15,764				
○○리 ○○-○	1,459	33				
○○리 ○○○-○	69,336	15,301				
○○리 ○○○	6,347	3,839				
○○리 ○○○-○	694	694				

※ 충청남도 ○○○○과 제출자료 재구성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6]의 규정에 따르면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여야 하고 동 복구지역의 경우도 호형 폐수로공 1,898m(B=1.0)를 설치하도록 설계를 하였음에도 감사 기간 동안 현지 확인 결과 일부지역은 폐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하였고 1차 복구 계획에서 존재하기로 했던 침사지 (4.0m×4.0m×2.0m) 160개를 2차 복구계획에서 제외 하여 복구가 끝난 후에도 침사지 부족으로 토사가 유출 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나. 복구계획서에 의하면 1차 복구지역의 경우 산마루 측구(221m, 300c)를 당초 계획하였으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산마루 측구 전체를 생략했고 현지 확인 결과 1차 준공지역과 3차 허가지역 경계부분의 경우 작은 계곡이 형성되어 토사 유출 등의 예방을 위해 침사지가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생략하였다.

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6]의 규정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의 경우 소단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비탈면의 각도는 75도 이하여야 하며 광물의 채굴 및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5

이하로 복구하도록 되어있고,

승인된 2차 복구설계도에 의하면 첫 번째 소단 기울기의 경우 1 : 1(45도)로 복구하도록 계획하고 승인 받았음에도 복구 현장 확인결과 일부지역 소단(3개소)*3)의 경우 90도로 준공된 소단이 있으며,

첫 번째 소단 또한 70도~80도로 복구되어 비탈면이 토사 쓸림(슬라이딩) 현상이 우려되고 실제 현장에서도 토사 쓸림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되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부적정하게 준공처리 하였다.

4.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미준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3항(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라) R-7-4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 오니는 [표3]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표3] 석재·골재폐수 처리 오니의 R-7-4유형 재활용 기준

1)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함
2) 함유된 유해물질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함.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함
4)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오염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입폐기물 및 지하수, 지표수 등에 대한 유해물질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 기관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석산의 토석채취 허가 또는 신고 기관에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채움재로 사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3)에 따른 유해물질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매분기별 1회, 채움재 사용이 완료된 이후에는 5년간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 수질 등을 분석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3) 소단 각도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기간동안 측량을 계획하였으나 기울기가 심하여 위험이 따르고 일부 지역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여도 90도 각도를 유지한 소단이 일부 존치된 것으로 확인됨(사진 확인)

따라서 아산시 (주)○○○○○○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 처리 오니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맞게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

한편 (주)○○○○○○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에 대한 처리 공정을 현장 확인한 결과 모래세척 후 탈수설비인 필터프레스 설비로 탈수 후 저장조에 보관하고 있으며,

탈수설비인 필터프레스의 처리효율은 약 30~40%로 탈수설비로 반입되는 석재·골재 폐수오니(함수율 85%이상)를 30%이하로 탈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재·골재폐수 처리 오니의 함수율을 30%이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조공정⁴⁾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에서는 건조공정 설치, 수분함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육안으로만 확인 후 재활용(채움재)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아산시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⁵⁾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⁶⁾

4) 반입 석재·골재 폐수오니 함수율 85%일 때 필터프레스 효율을 감안한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함수율은 약 51~59%임.

5) 모래 등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에는 카드뮴과 비소, 구리, 납 등의 유해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르면 사전분석 확인 대상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산시 ○○○○과는 석재·골재폐수처리 오니에 대한 재활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하지 않고 있음

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준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주)○○○○○○에서는 3차 토석채취 허가연장⁷⁾을 받고도 토사채취 반출기간을 2011.12.15.~2016.12.31.로 허가받은 토석채취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고, 아산시 ○○○○과는 2012.5.21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수리하였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배출자 변경신고 없이⁸⁾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석재·골재폐수 처리 오니를 배출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9.18. 변경허가를 득하고 2015.9.18.~2019.3.30. 까지 연장

8)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